

# 심 사 보 고 서

【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】

1996. 12. 26.

산업. 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1996. 11. 21
- 나. 제출자 : 서산시장
- 다. 회부일자 : 1996. 12. 20
- 라. 상정일자 : 1996. 12. 26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자 : 지적과장 유제선)

### 가. 제안이유

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“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” 를 개정하고,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심의 소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표준지의 분포. 평가. 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함(안 제2조).
-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을 지적과장.세무과장으로 하고, 위원 정수를 10인 이상 15인 이하로 규정함(안제3조).
- 위촉위원중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3조).
- 지가의 적정성.균형성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(안 제7조).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본 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서,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정됨은 물론 관련법규에도 저촉되는 사항없이 적법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.

### 4. 주요질의 및 답변요지

- 없음

### 5. 토 론

- 생략

### 6. 소수의견

- 없음

### 7. 심사결과

- 원안대로 가결

#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1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 . . . . .

제 출 자 : 서 산 시 장

## 1. 제 안 이 유

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“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 조례”를 개정하고, 위원회를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심의소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 하고자 하려는 것임.

## 2. 주 요 골 자

- 가. 위원회의 기능으로써 표준지의 분포·평가·개별공시지가의 결정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토록 규정함. (안 제2조)
- 나.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하고, 당연직 위원을 지적과장·세무과장으로 하고, 위원정수를 10인이상 15인이하로 규정함. (안 제3조)
- 다. 위촉위원중 해촉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5조)
- 라. 지가의 적정성·균형성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
## 3. 참 고 사 항

- 관련법령·제정근거 :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2조의2, 동법 시행령 제14조

# 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.

1. 표준지의 분포·평가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평가
2. 법 제10조의2제1항의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
3.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
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

제3조제1항중 “3인” 을 “2인” 으로 하고, “20인이내” 를 “10인이상 15인이하” 로 하며, 동조 제2항중 “시장” 을 “부시장” 으로 하고, “부시장” 을 “건설도시국장” 으로 하며, 동조 제3항중 “지적과장·세무과장·산업과장” 을 “지적과장·세무과장” 으로 한다.

제5조중 “위원장” 을 “시장” 으로 한다.

제7조 내지 제9조를 제8조 내지 제10조로 하고, 제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(실무심의 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지가의 적정성, 균형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의 소위원회(이하 “소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③소위원회위원은 위원장이 그 위원중에서 지명하며, 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부

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2조(기능) 위원회는 공시지가의 표준지 조사·평가·선정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에 대한 분석과 토지평가등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운영한다.</p>	<p>제 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표준지의 분포·평가등 당해지역의 지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분석평가</li> <li>2. 법 제10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법 제1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개별 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</li> <li>4.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
<p>제 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, 부위원장 각1인 및 당연직위원 3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위원장은 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.</p> <p>③당연직위원은 지적과장, 세무과장, 산업과장이 된다.</p>	<p>제 3조(구성) ①- - - - - 2인- - - - - 10인이상 15인이하- - - - - .</p> <p>②- - - - - 부시장- - - - - 건설도시국장- - - - - .</p> <p>③- - - - - 지적과장·세무과장- - - - - .</p>
<p>제 5조(위원의해촉) 위촉위원중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	<p>제 5조(위원의해촉) - - - - - 시장- - - - - .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
<p>(신 설)</p>	<p>제 7조(실무심의 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지가의 적정성, 균형성등을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심의 소위원회 (이하 "소위원회" 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</p>

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 7조 내지 제 9조 (생략)</p>	<p>②소위원회는 5인이상 9인이하의 위원 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③소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그위원중 에서 지명하며, 소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p> <p>④소위원회의 의사는 위원과반수의 출석 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.</p> <p>제 8조 내지 제10조 (현행제7조 내지 제9조 와 같음)</p>